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2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조지연·김종양·박덕흠

김정재 · 김형동 · 우재준

박수민 • 박준태 • 박충권

고동진 · 임이자 · 김위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국세체납처분의 예에"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생 략)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 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국세 강제징 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있다. 률 | 에-----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 <신 설> 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